

제17조 (운영위탁) ①시장은 시립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(이하 “운영”이라 한다)에 관한 업무를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수탁기관에서는 운영의 효율과 시민편의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다.

제18조 (운영지원) 시장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 또는 경비를 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제19조 (수탁자의 의무) ①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②수탁자는 제18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 등을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

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20조 (위탁의 취소 등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위탁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
2.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21조 (지도·감독)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,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·서류·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.

제22조 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) 제7조의 사용료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 제정되는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 (운영위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중인 시립묘지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.

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70
------	----

2002년 12월 26일  
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년 11월 4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2년 11월 6일
- 다. 상정일자 : 2002년 12월 26일

(제13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강창구 건설국장)

□ 제안이유

-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가 사망한 때에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사망한 운영자 가족의 전업준비 등을 감안하여 점용허가 갱신만료

(2007.12.31)기년까지 승계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

- '89년도 이전에 설치하여 노후·훼손이 심한 가로판매대 등을 새로운 모델로 개선하여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교체정비한 시설물의 대부요율을 조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가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에 한하여 승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
- 대부요율은 2000년 이후에 교체정비한 가로판매대의 시설물 가액이 2000년도 전에 설치된 것보다 현저히 높아(5배 이상), 2000년도 이후에 교체정비한 가로판매대 등에 한하여 현행 시설물 가액의 100/1000으로 규정한 대부요율을 갱신만료 기한까지 한시적으로 70/1000으로 경감 조정하려는 것임.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안석수)

본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해 7월 16일 시민보행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를 제정 시행한 이후 계속해서 제기되어온 관련민원과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임.

- 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완화 (안 제4조제2항제1호)
  - 현행 조례가 운영자인 수허가자가 사망한 때에는 도로점용허가 갱신을 제한하고 도로를 원상회복 하도록 일괄 규정하고 있는 것을, 그 배우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로점용허가 갱신만료기한인 2007년12월31까지 계속해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
  - 대부분 배우자에 대한 계속 사용허가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타 공유재산 사용 허가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예상되기는 하나 전업준비 등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잔여가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겠음.
- 대부요율 경감(안 제11조제1항제2호)
  - 2000년1월1일 이후 교체 정비된 보도상영업시설물의 대부료 산정 요율을 현행 1000분의 100에서 1000분의 70으로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은
  - 2000년1월1일 이후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교체 설치된 시설물이 물가상승 등으로 제조원가가 높아져(143만1천5백원→730만원) 대부료도 5배 이상 인상됨에 따라(14만원→73만원) 낮은 대부료를 납부하는 중전 시설운영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볼 때 대부요율의 인하조정은 별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.

구 분	시설물 가액	대 부 료		비 고
		현 행	조 정(안)	
2000년도 이후	7,300,000원	730,000원	511,000원	당초 100/1000 변경 70/1000
2000년도 이전	1,431,500원	143,150원	현행과 같음	현행과 동일

※ 시유재산관리에 관한 일반규정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고 있는 공유잡종재산의 대부료 산정 하한율(1000분의 50이상)을 기준으로, 전체적인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시설물의 연간 대부료를 20만원 정도 감액하는 수준에서 내부정책회의 등을 통해 대부요율 책정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.....

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71
------	----

2002년 12월 26일  
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년 11월 4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2년 11월 6일
- 다. 상정일자 : 2002년 12월 26일

(제13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강창구 건설국장)

- 서울시가 일부사업을 공단에 위탁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위탁업무마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
- 자치구 등과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공단이 대행할 경우에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의회의 통제가 가능하므로 시장이 공단의 대행사업승인시 의회의 사전의결을 또다시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.

3. 검토의견(전문위원 안석수)

-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해 삭제하고자 하는 “시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위탁자의 사무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대행을 승인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” 하고 있는 관련규정은
  - 지난 97년 6월 제95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시, 당시 상정되어 있던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공단 업무의 운영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행사업 수행을 시장이 승인하기에 앞서 그 타당성 등에 대한 시의회 차원에서의 사전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
  -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 수행 전 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우리 의회가 의결함으로써 도입·시행된 것임.
- 그동안 공단 대행사무에 대한 시의회 사전 의결제도는
  - 서울시 자체사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 “지방자치단체의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 등에 위탁할 때에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도록 규정”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5조(사무의 위임 등) 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그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 등의 제정시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어, 본 조례에 의한 시의회 승인은 사실상 중복된 것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자주 지적되어 왔으며
  - 그러한 측면에서 동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.
- 다만, 그와 같은 시 자체사무를 제외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무 등의 시설관리공단 대행까지도 시의회 사전의결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
  - 그 위탁사무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따라 공단 조직과 인력 운영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